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2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한병도·김성원·허종식

박정현 • 장철민 • 이춘석

안도걸 • 박용갑 • 김용태

이양수 · 조승환 · 서천호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에 잠재적 위기지역으로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각 지역을 넘어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 된 지방소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 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둠(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4조).
- 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여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및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둠(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호)의 의결을 전 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4조 중 "인구감소지역에"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로 한다.

제34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도기본계획"은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군·구기본계획"은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시·군·구기본계획"은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로 보며,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로 본다.
- ⑥ 제4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생활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기본계획"은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시·군·구기본계획"은 "시·군·구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시·군·구"로,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
	역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전부장관은 <u>인구감소지역에</u> 대	인구감소지역 및 인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u>구감소관심지역에</u>
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 • ② (생 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
	는 시・도지사 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속하는 시장·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신 설>

<신 설>

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 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감소관심 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 는 시 · 도지사 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속하는 시장·군수 ·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계획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 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 조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 인구감소 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은 "시・군・구 인구감소관 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신 설>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도기본계획"은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 획"으로, "시·군·구기본계획" 은 "시・군・구 인구감소관심 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시· 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 역대응위원회"는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 응위원회"로 보며, "인구감소지 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 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 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 · 군 · 구"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생활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기본계획"은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 기본계획"으로, "시・군・구기 본계획"은 "시·군·구 인구감 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

 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로, "인구감

 소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

 으로
 본다.